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8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2. 18　　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2. 1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26　　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병역법 제78조의 시행에 따른 시군구병무위임업무의 폐지

○ 시군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과명칭 조정

○ 2003.1.1부터 "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"의 정상운영에 따른 "위생환경사업소"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

3. 주요골자

○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조제2항제2호사목)

○ 과명칭변경 : 현장민원해결과 → 주민지원과(안 제3조제1항)

○ "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"의 신설과 업무조정(안 제12조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제78조의 시행에 의거 시군 병무위임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병무업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시군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과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며, 2003. 1. 1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

가동 예정이므로 현재 시운전 중인 시설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여 각종 조례·규칙 등 제반규정을 정비 하므로서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현시점에서 현장민원 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명칭변경코자 하는 것은 서두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행자부 표준안 시달시 개정할 수는 없는지?

● 답 : 2003년 1월부터 고성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물이 시운전을 끝내고 정상 가동되므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 이관이 조속히 완료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되어야할 시급한 사항으로 표준정원제의 시달까지는 기다릴수 없는 형편임.

6. 토　　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